

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.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서울·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

- 관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20883(2020.8.15.)
- 서울·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16일부터 서울·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.
- 이에 지난 6월 2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 조치가 시행된 고위험시설 중 서울·경기 지역의 클럽·감성주점·콜라텍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하여 방역을 강화함을 안내드립니다.

- 아 래 -

- 조치 대상 : 서울·경기 지역의 클럽·감성주점·콜라텍
- 적용 기간 : 2020년 8. 16. 0시 ~ 별도 해제 시
- 조치 내용
 - 지난 6월 2일부터 부과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(집합제한) 조치를 유지하되, 이용인원 제한(4㎡당 1명), 시설 내·시설 간 이동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(첨부 참조)
※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, 지자체장이 집합제한·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
 -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
- 또한, 고위험시설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니, 소관시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조치 대상 :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서울·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
학원(300인 미만)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예: 150 ㎡ 이상)
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

실내체육시설 멀티방 · DVD방 장례식장

- 적용 기간 : 2020년 8. 16. 0시 ~ 별도 해제 시
- 조치 내용
 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,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(집합제한)
 - 시설 사업주(종사자) 및 이용자 준수사항 : 붙임 참조
※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, 지자체장이 집합제한 · 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
-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
 - 보건복지부장관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
5.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내용을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1. 서울 ·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 방역수칙 추가 조치 1부.
2. 서울 ·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. 끝.

교 육 부 장



수신자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김신혜

학생건강정책과
학생건강정책과장
전결 08/15
조명연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6968 (2020.08.15.) 접수 총무팀-3471 (2020.08.18)

우 (30119)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14동 교 / www.moe.go.kr
육부 (어진동)

전화 044-203-6814 전송 044-203-6438 / shin8352@korea.kr / 비공개(5)

서울·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

①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경기도

② 적용 대상

- ▲학원(300인 미만) ▲오락실 ▲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*(예: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m² 이상) ▲워터파크 ▲종교시설 ▲공연장 ▲실내 결혼식장 ▲영화관 ▲목욕장업 ▲실내체육시설 ▲멀티방·DVD방 ▲장례식장

*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적·수용인원 등 기준 자율적 마련 가능,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

③ 적용 기간

- 2020년 8월 16일(일) 0시 ~ 별도 해제 시까지

④ 법적 근거

-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

*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‘홍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’

⑤ 추진내용 및 절차

- ① (중대본) 학원, 오락실,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불가피하게 운영 시
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
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)



- 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
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- ③ (지자체)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·집합금지 행정조치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·집합금지명령)



- ④ (지자체) 집회·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☞ 감염병예방법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·집합 제한조치

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

< 핵심 방역수칙 >

| 사업주·책임자 | 이용자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출입자 명부 관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▶ 마스크 착용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|

- 지자체는 **지자체별 상황**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, 지자체장이 집합 제한·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○ 지자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집회·집합금지 행정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- 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이 집회·집합 금지 행정조치** 실시

☞ 감염병예방법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·집합금지명령

-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 - 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